

10. 外國人의 土地取得 및 管理에 관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交通部令 第42號 1996. 2. 10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계속보유허가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기명의로 보유하다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등록증 기

타 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4. 상속 기타 포괄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 서식]

토지에 관한 권리계속보유(허가신청·신고)서				처리기간 허가60일 신고15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 또는 법인명칭	(성별)	국적	
	생년 월일 또는 법인 설립연월일		등록 번호	
	주 소	(전화)		
신청 신고 사항	권리종류		용도	
보유 토지	토지소재지(지번별)		지 목	면적(m ²)
계속보유 사유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기명의로 보유하다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1부 3.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등록증 기타 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4. 상속 기타 포괄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0302-00911번
'95.12.26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이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고 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속 기타 포괄승계를 이유로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등기부등본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제출하도록 함. <건설교통부자료 제공>

잘 지은 건물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